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성동구 제4선거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황철규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전면철거방식으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를 보완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된 바,

장래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준공된 아파트는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종 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아 현행 기준보다 용적률이 높은 이유로 사업성 측면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쉽지 않으므로, 리모델링 사업의 잠재적인 수요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리모델링에서 별도의 공공임대주택이 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아파트는 향후 재건축한다는 기조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허가 동의요건 등의 충족이 어려워 사업 진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본 건의안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조건을 구분하는 등의 「주택법」 개정을 촉구하여

공공임대주택단지와 혼합되어 있는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